

최근 퇴직연금제도 도입 실태와 시사점

반정호*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법정퇴직금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도입 이후 45년간 거의 변화 없이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체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기업(사용자)은 일시불의 퇴직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제도적 성격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근로자 절반 이상이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어서 퇴직금제도는 법정복지제도로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반정호, 2005).

이에 1998년부터 ‘퇴직금제도 개선’이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선정, 5년여의 논의를 거쳐 관련입법안이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해 1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공포(법률 7379호)됨으로써 2005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었다. 다만 기업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고 대신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본고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비교적 최근까지의 도입 현황과 연금의 적립 규모 등의 전반적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II. 제도적 특징과 도입 현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의 다양한 제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고, 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형태이며, IRA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의미한다. DB형은 미래의 퇴직급여액을 할인하는 보험수리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미국이나 영국식의 DB형과 차이가 있으나 기존의 퇴직금의 액수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고광수오승현, 2007). DC형은 전액 사외적립 방식을 채택하여 관리상 편리성이 확보된 제도인 동시에 수익성이 고려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DB형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기초한 제도로 요약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비해 노사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기업의 비용 부담 및 경영의 장애요소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계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

<표 1> 퇴직금과 퇴직연금제 비교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비용부담 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퇴직급여 형태와 수준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과 같음)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비용부담 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 (1/12)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다름	퇴직금과 같음 (연간 임금총액의 8.3%)
적립방식	사외적립 여부 임의	부분 사외적립 (예상급여액의 60%)	전액 사외적립
사용자 관리부담	인사노무관리 경직적	퇴직 후에도 관리 필요	적립 후 부담 없음
직장이동시 통산	어려움	어려움	쉬움
적합기업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퇴직 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자료 : 노동부(2005),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설명자료』.

나 과거 40년을 넘게 유지해 오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비록 그 제도의 효용이 분명할지라도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대표(노조원의 과반수 혹은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역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노사협의의 과정을 거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결정한 이후에도 DB형과 DC형 중에서 운영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노사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사업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 도입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여러 요소들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실적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06년과 2007년의 전반적인 평가도 퇴직연금의 활성화 수준이 기대수준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류건식·이봉주, 2007; 고광수·오승현, 2007; 김원식·신문식, 2007).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8월 말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퇴직연금제도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5인 이상 사업체(2006년 기준)의 1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모두 42,105개로 5인 이상 사업체(504,210개)의 8.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약 60%는 DC형(40.0%)과 DB형(19.5%)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했고, 나머지 39.6%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 제도인 IRA를 채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200개(20.7%) 정도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상태이며, 선택한 제도유형은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DB형 제도가 46.5%로 가장 높고,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선택한 기업이 28.0%, DC형은 25.5%로 나타났다. 5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와 IRA 특례를 선택한 기업이 각각 40.0%와 39.8%로 높은 반면, DB형은 19.5%로 낮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은 2.0%로 매우 낮고, 100~300인 미만 기업은 12.5%, 500인 이상 대기업은 20.7%로 나타나 대체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기업에서의 낮은 도입률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IRA특례 규정 및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도입유예 규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2010년에 이르면 영세사업체의 도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I : 사업체 기준

(단위: 개, %)

	전 체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DB & DC	IRA 특례
사업장수	42,105	8,249(19.5)	16,828(40.0)	366(0.9)	16,662(39.6)
500인 이상	200	93(46.5)	51(25.5)	56(28.0)	-
500인 미만	41,905	8,156(19.5)	16,777(40.0)	310(0.7)	16,662(39.8)

주: 개인퇴직계좌(IRA)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이 DC와 유사하나 사용자의 규약 작성·신고의무 및 교육의무가 면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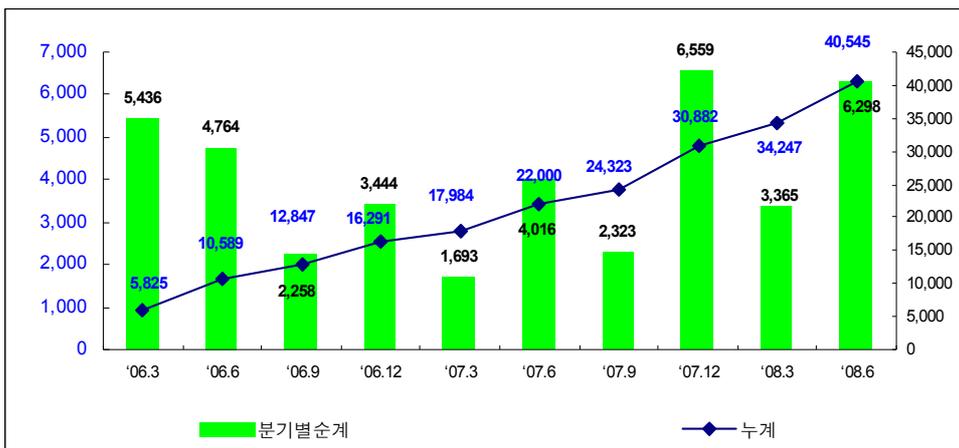
<표 3> 사업체 규모별 도입 현황

(단위: 개, %)

	10인 미만	10 ~ 29인	30 ~ 99인	100 ~ 299인	300 ~ 499인	500인 이상
① 도입사업장수	24,441	11,156	5,053	1,085	170	200
② 전체 사업장수	1,189,714	156,304	45,083	8,700	1,018	965
비율(①/②)	2.0	7.1	11.2	12.5	16.7	20.7

주: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분류(305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141개)을 합한 총 446개소(2008년) 중 67개소가 도입되어 도입률은 15.0%임.

[그림 1] 분기별 퇴직연금 도입사업체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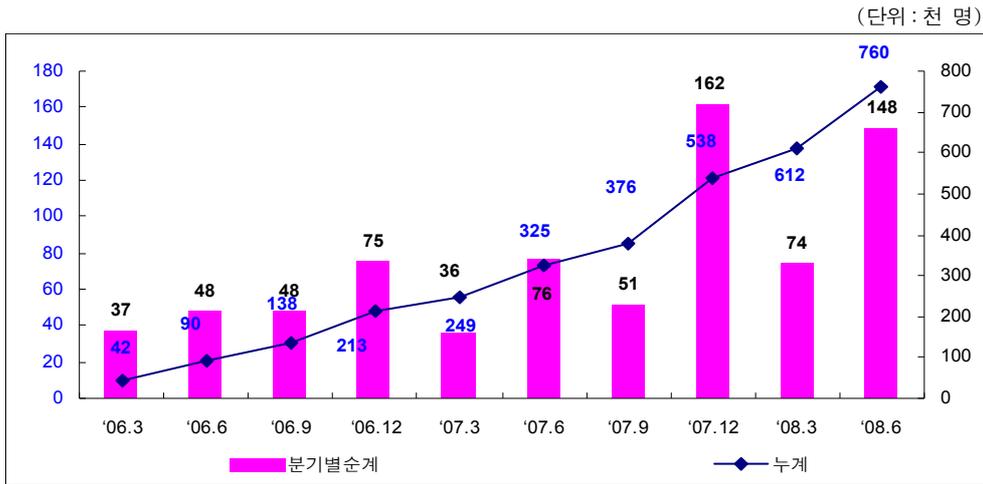
2008년 8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는 787천 명으로 이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총 6,811,867명, 매월노동통계 2007년 평균)의 11.6%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입 근로자의 54.4%는 DB형 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37.6%는 DC형, 7.5%는 IRA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사업체 1개당 평균 18.7명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추

<표 4>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I: 근로자 기준

	전 체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비율)	787,004 (100)	428,400 (54.4)	295,242 (37.6)	59,280 (7.5)	4,082 (0.5)
1개소당 평균 가입근로자수	18.7	49.7	17.2	3.6	-

주: DB 가입자수의 경우, 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중복가입자가 포함된 수치임.

[그림 2] 분기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증가 추이



산 약 4.3조의 적립금(2008년 8월 기준)이 축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DB형 퇴직연금이 2.8조로 전체 적립금의 65.4%를 차지하고 1.2조(27.7%)는 DC형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7% 정도는 IRA 특례와 개인형 IRA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모두 46개(금융감독원 등록 현황은 52개소)로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13개, 생명보험(12개)과 손해보험(8개) 등 보험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기관별 적립금의 운용규모를 보면,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43% 정도인 1.8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생명보험사가 39.3%인 1.7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된 것처럼,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적립금 규모가 GDP 수준(미국 1경 5천 조, 일본 3,000조, 영국 2,900조)에 이르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노동부, 2008).

한편, <표 6>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2006년 조사)」에 나타난 30인 이상의 사업체 특성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8.8%이며, 이 중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81.0%, 18% 정도는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

<표 5>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I: 적립금 기준

		전 체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적립금 기준	적립금(억 원) (비율)	43,090 (100.0)	28,207 (65.4)	11,923 (27.7)	1,880 (4.4)	1,080 (2.5)
	1개소당 평균 적립금	1.02	3.27	0.69	0.11	-
		전 체	은행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
운용관리 기관 기준	사업자수	46	13	12	13	8
	적립금(백만 원) (비율)	4,309,051 (100.0)	1,847,694 (42.9)	1,692,764 (39.3)	468,555 (10.9)	300,037 (7.0)

주: 운용관리기관별 실적은 업권별로 협회에 실적 제출한 운용관리기관 기준임. 2008년 8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2개소임.

택된 퇴직연금제도의 형태는 60.5%가 DB형이고, 29%가 DC형, 11% 정도는 IRA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수가 비교적 적은 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규모별 도입 현황과 정반대의 결과인데, 이는 분석자료의 조사시점이 제도 도입 초기였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도 도입 초기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식·신문식, 2008). 제도의 전환에 대한 노사의 의사결정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제도 도입이 신속·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이다.

퇴직연금은 유노조 사업체보다 무노조 사업체의 도입률이 높다. 무노조 사업체의 약 10%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해, 유노조 사업체는 4.5%에 불과하다.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매우 핵심적인 이해관계자(stakeholder) 역할을 하며, 실제 이 제도의 논의과정에서 제도 전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특징적인 것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유노조 사업체가 선택한 제도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유노조 사업체의 81.4%가 DB형을 선택하고 있고, DC형은 16.2%에 불과하다. 이는 무노조 사업체의 DB형 기업체(58.1%)에 비해 23.3%p 높은 수치이다. 퇴직연금의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선호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고, 사용자측은 DC형 퇴직연금을 선호한다. 즉 퇴직금제도의 세계상 혜택과 현금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은 기존 퇴직금제도에 안정성을 가미한 DB형 제도가 선호되며,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기업측은 즉각적인 기여에 의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DC형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성에 기초해 볼 때, 향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는 퇴직연금의 가입은 DC형보다는 DB형 퇴직연금제

<표 6>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Ⅱ : 사업체패널조사

	도입여부	적용범위		제도형태			
		모든근로자	일부희망자	DB형	DC형	IRA제도	
전 체	8.8	81.0	17.6	60.5	29.0	10.6	
산업	제조업	8.2	81.2	17.6	57.3	28.2	14.5
	비제조업	9.3	80.9	17.6	62.8	29.5	7.7
	전기·가스·수도업	0.0	-	-	-	-	-
	건설업	10.1	100.0	0.0	53.2	32.3	14.5
	개인서비스업 ¹⁾	3.3	52.2	47.8	0.0	0.0	100.0
	유통서비스업 ²⁾	5.5	79.0	21.0	34.1	52.1	13.9
	사업서비스업 ³⁾	7.5	91.7	8.3	90.9	9.1	0.0
	사회서비스업 ⁴⁾	20.2	100.0	0.0	68.3	31.7	0.0
규모	100인 미만	9.2	81.2	17.7	63.6	27.0	9.4
	100 ~ 299인	8.6	94.0	6.0	47.8	37.1	15.2
	300 ~ 499인	4.4	100.0	0.0	71.9	9.1	19.0
	500인 이상	2.5	76.8	23.2	47.6	52.4	0.0
노조	노조 없음	9.8	81.0	17.7	58.1	30.4	11.5
	노조 있음	4.5	81.5	17.0	81.4	16.2	2.4
섹터	민간부문	8.8	100.0	0.0	60.5	28.9	10.6
	공공부문	2.1	57.3	28.2	50.0	50.0	0.0

주 : 1)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3)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8), 『사업체패널조사 2005 기초분석보고서』.

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사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선호도의 불일치는 제도 도입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54.0%의 사업체가 전혀 없거나 아주 낮다고 응답하였고, 38.6%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전환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확실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7%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도 2010년 이후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41.5%로 가장 높다. 도입하게 될 경우 선호하는 퇴직연금의 형태는 DB형이 될 것이라는 사업체가 54.3%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향후 기업 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어렵게 한다. 또한 도입의 시기 역시 5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되는 2010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기업들은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선호하는 제도의 유형 역시 절반 이상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부분도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세제해택 등의 이점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설명에 대부분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은 노사 모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의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도입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체와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수반되어 오던 노사합의 부분을 근로자대표의 의견취취만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 도입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내용과 신설된 사업장에는 설립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DB형과 DC형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던 기존 방식에서 두 제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주택구입, 장기요양의 경우에만 중도인출) 및 자영업 종사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에로의 가입촉진 등의 충분한 노후재원 마련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다.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해 기존 법안의 개정 이외에서 크고 작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계속적으로 지적된 도입 실적의 부진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체계화하는 등의 문제가 다차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세규모 사업체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보원을 통해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11]

<참고문헌>

- 고광수·오승현(2007), 「퇴직연금제 형태의 다양화 연구」, 『사회복지정책』 3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원식·신문식(2007),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경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노동부(2005),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설명자료」.
- _____ (2008), 「퇴직연금 도입 현황(2008년 8월 말 기준)」(<http://www.molab.go.kr>).
- 류건식·이봉주(2007),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및 대응과제」, 『보험학회지』 77, 한국보험학회.

반정호(2005),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선호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제 도입여부와 제도 유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4),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08), 『사업체패널조사 2005 기초분석보고서』.

<부표 1> 최근 2년간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 종합

	도입사업장(개)		근로자수(천 명)		적립금액(억 원)	
	순계	누계	순계	누계	순계	누계
'06. 8	588	11,797	14	111	549	2,176
'06 .9	1,050	12,847	27	138	2,042	4,218
'06.10	638	13,485	9	147	458	4,676
'06.11	1,337	14,822	22	169	961	5,637
'06.12	1,469	16,291	44	213	1,930	7,567
'07. 1	373	16,664	5	218	255	7,822
'07. 2	473	17,137	13	231	340	8,162
'07. 3	1,693	17,984	18	249	1,155	9,317
'07. 4	938	18,922	16	265	1,474	10,791
'07. 5	1,944	19,928	26	291	1,575	12,366
'07. 6	4,016	22,000	34	325	1,601	13,967
'07. 7	582	22,582	16	341	797	14,764
'07. 8	1,302	23,302	14	355	638	15,402
'07. 9	2,323	24,323	21	376	2,108	17,510
'07.10	1,562	25,885	19	395	1,251	18,761
'07.11	4,206	28,529	41	436	2,102	20,863
'07.12	6,559	30,882	102	538	6,687	27,550
'08. 1	457	31,339	15	553	307	27,857
'08. 2	1,765	32,647	29	582	1,322	29,179
'08. 3	1,600	34,247	30	612	2,949	32,128
'08. 4	1,770	36,017	27	639	1,644	33,772
'08. 5	1,754	37,771	30	669	2,213	35,985
'08. 6	2,774	40,545	91	760	4,456	40,441
'08. 7	534	41,079	9	769	880	41,321
'08. 8	1,026	42,105	18	787	1,769	43,090